
2020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학생용]

장학금 신청은 '19.12.19.(목) 10시부터 '20.1.7.(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019. 12.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목 차



I. 장학금 개요	1
II. 신청 및 선발절차	2
III. 신청 기간	3
IV. 장학금 지급 및 반납	4
V. 추진 일정	5
붙임1.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6
붙임2. 제출서류 안내(농업인·소득분위 증빙서류)	11
붙임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13

I 장학금 개요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붙임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소득분위) '19.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0.2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

'21년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 '19.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지원대학

■ 341개 대학(학교명단 : 붙임1)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단 교육부 지정 2020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지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II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자/계속자>

①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② “농업인자녀 장학금” 선택→ ③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④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⑤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⑥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주의사항】

- 증빙서류 제출시 부모동의서도 제출해야함 [붙임]3. 참조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기타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 '19.2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8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19.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Ⅲ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12.19.(목) 10:00~'20.1.7.(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IV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자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1)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 ※ 단 학생이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1)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V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추진주체	시기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19.12.19(목)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신청학생	'19.12.19(목)~ '20.1.7(화) (20일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농어촌희망재단	'20.2.11(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 고지서 또는 입금자명에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표기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20.2월 중

【붙임1】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341개교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김해)
2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3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4	가톨릭관동대학교
5	가톨릭대학교(성심)
6	가톨릭상지대학교
7	감리교신학대학교
8	강남대학교
9	강동대학교(장호원)
10	강릉영동대학
11	강릉원주대학교(통합)
12	강원관광대학
13	강원대학교(삼척)
14	강원대학교(춘천)
15	강원도립대학
16	거제대학교
17	건국대학교(서울)
18	건국대학교(충주)
19	건양대학교
20	경기과학기술대학
21	경기대학교(수원)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3	경남대학교
24	경남도립거창대학
25	경남도립남해대학
26	경남정보대학
27	경동대학교
28	경민대학
29	경북대학교
30	경북과학대학교
31	경북대학교(통합)
32	경북도립대학교
33	경북보건대학교
34	경북전문대학교

연번	학교명
35	경상대학교
36	경성대학교
37	경운대학교
38	경인교육대학교
39	경인여자대학
40	경일대학교
41	경희대학교(국제)
42	경희대학교(서울)
43	계명대학교
44	계명문화대학
45	계원예술대학교
46	고구려대학교
47	고려대학교(세종)
48	고려대학교(안암)
49	고신대학교
50	공주교육대학교
51	공주대학교
52	광신대학교
53	광운대학교
54	광주가톨릭대학교
55	광주과학기술원
56	광주교육대학교
57	광주대학교
58	광주보건대학
59	광주여자대학교
60	구미대학교
61	국민대학교
62	국제대학
63	군산간호대학교
64	군산대학교
65	군장대학교
66	극동대학교
67	금강대학교
68	금오공과대학교

연번	학교명
69	기독교간호대학교
70	김천대학교
71	김포대학
72	김해대학교
73	꽃동네대학교
74	나사렛대학교
75	남부대학교
76	남서울대학교
77	농협대학교
78	단국대학교(죽전)
79	단국대학교(천안)
80	대경대학
81	대구가톨릭대학교(효성)
8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3	대구공업대학교
84	대구과학대학
85	대구교육대학교
86	대구대학교(경산)
87	대구보건대학
88	대구예술대학교
89	대구한의대학교
90	대덕대학
91	대동대학교
92	대림대학교
93	대신대학교
94	대원대학교
95	대전가톨릭대학교
96	대전과학기술대학교
97	대전대학교
98	대전보건대학교
99	대전신학대학교
100	대진대학교
101	덕성여자대학교
102	동강대학

연번	학교명
103	동국대학교(경주)
104	동국대학교(서울)
105	동남보건대학교
106	동덕여자대학교
107	동명대학교
108	동서대학교
109	동서울대학
110	동신대학교
111	동아대학교
112	동아방송예술대학
113	동아보건대학교
114	동양대학교
115	동양미래대학
116	동우대학
11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8	동원대학
119	동의과학대학
120	동의대학교
121	동주대학
122	두원공과대학교
123	루터대학교
124	마산대학교
125	명지대학교(서울)
126	명지대학교(용인)
127	명지전문대학
128	목원대학교
129	목포가톨릭대학교
130	목포과학대학교
131	목포대학교
132	목포해양대학교
133	문경대학교
134	배재대학교
135	배화여자대학
136	백석대학교

연번	학교명
137	백석문화대학
138	백제예술대학교
139	부경대학교
140	부산가톨릭대학교
141	부산경상대학
14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43	부산교육대학교
144	부산대학교
145	부산여자대학
146	부산예술대학교
147	부산외국어대학교
148	부천대학
149	삼육대학교
150	삼육보건대학교
151	상명대학교(서울)
152	상명대학교(천안)
153	상지대학교
154	상지영서대학
155	서강대학교
156	서경대학교
157	서라벌대학교
158	서영대학
15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0	서울교육대학교
161	서울기독대학교
162	서울대학교
163	서울시립대학교
164	서울신학대학교
165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66	서울여자대학교
167	서울예술대학교
168	서울장신대학교
169	서울한영대학교
170	서원대학교

연번	학교명
171	서일대학
172	서정대학
173	선린대학교
174	선문대학교
175	성결대학교
176	성공회대학교
177	성균관대학교(통합)
178	성덕대학교
179	성신여자대학교
180	성심외국어대학
181	세경대학교
182	세명대학교
183	세종대학교
184	세한대학교
185	송곡대학교
186	송원대학교
187	송호대학교
188	수성대학교
189	수원가톨릭대학교
190	수원과학대학
191	수원대학교
192	수원여자대학
193	숙명여자대학교
194	순천대학교
195	순천제일대학교
196	순천향대학교
197	송실대학교
198	송의여자대학
199	신구대학
200	신라대학교
201	신성대학
202	신안산대학교
203	신한대학교
20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연번	학교명
205	아주대학교
206	아주자동차대학
207	안동과학대학교
208	안동대학교
209	안산대학교
210	안양대학교(안양)
211	여주대학
212	연성대학교
213	연세대학교(서울)
214	연세대학교(원주)
215	연암공과대학교
216	연암대학교
217	영남대학교(경산)
218	영남신학대학교
219	영남이공대학
220	영산대학교
221	영산신학대학교
222	영진전문대학
223	예수대학교
224	예원예술대학교(통합)
225	오산대학
226	용인대학교
227	용인송담대학
228	우석대학교
229	우송대학교
230	우송정보대학
23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32	울산과학대학
233	울산대학교
234	원광대학교
235	원광보건대학
236	위덕대학교
237	유원대학교
238	유한대학

연번	학교명
239	을지대학교(대전)
240	을지대학교(성남)
241	이화여자대학교
242	인덕대학
243	인제대학교(김해)
244	인제대학교(부산)
245	인천가톨릭대학교
246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247	인천대학교
248	인천재능대학
249	인하공업전문대학
250	인하대학교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252	장안대학
253	전남과학대학교
254	전남대학교(광주)
255	전남도립대학교
256	전북과학대학교
257	전북대학교
258	전주교육대학교
259	전주기전대학
260	전주대학교
261	전주비전대학
262	제주관광대학교
263	제주대학교
264	제주한라대학
265	조선간호대학교
266	조선대학교
267	조선이공대학
268	중부대학교
269	중앙대학교(서울)
270	중앙대학교(안성)
271	중앙승가대학교
272	중원대학교

연번	학교명
273	진주교육대학교
274	진주보건대학교
275	차의과학대학교
276	창원대학교
277	창원문성대학
278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79	청암대학
280	청운대학교
281	청주교육대학교
282	청주대학교
283	초당대학교
284	총신대학교
285	추계예술대학교
286	춘천교육대학교
287	춘해보건대학교
288	충남대학교
289	충남도립대학교
290	충북대학교
291	충북도립대학
29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93	충청대학
294	침례신학대학교
295	칼빈대학교
296	케이씨대학교
297	평택대학교
298	포항공과대학교
299	포항대학교
300	한경대학교
301	한국골프대학
302	한국과학기술원
303	한국관광대학교
304	한국교원대학교
305	한국교통대학교(충주)
3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07	한국복지대학교

연번	학교명
30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09	한국성서대학교
310	한국승강기대학교
311	한국영상대학교
312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313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3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315	한국체육대학교
316	한국항공대학교
317	한국해양대학교
318	한남대학교
319	한동대학교
320	한라대학교
321	한림대학교
322	한림성심대학
323	한밭대학교
324	한서대학교
325	한성대학교
326	한세대학교
327	한신대학교
328	한양대학교(서울)
329	한양대학교(안산)
330	한양여자대학
331	한영대학
332	한일장신대학교
333	협성대학교
334	혜전대학
335	호남대학교
336	호남신학대학교
337	호산대학교
338	호서대학교
339	호원대학교
340	홍익대학교(서울)
341	홍익대학교(세종)

【붙임2】 ※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 안내 [농업인 · 소득분위 증빙서류]

□ 농업인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첨부8) 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업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군·구 ■ (개체확인) 축협 ■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는 1년이상 '18.12.19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 실적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 산림조합 ※ 실적증명서는 1년이상 '18.12.19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발행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소득분위증명서

구비서류	발행처
'19.2학기 소득분위증명서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장학금→증명서발급→소득구간(분위)통지서 발급

○ 제출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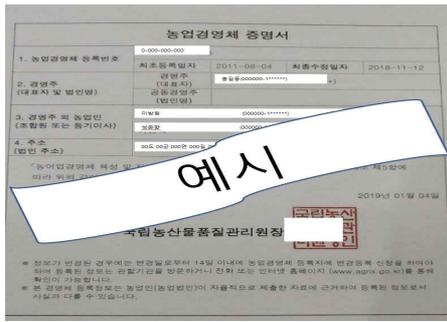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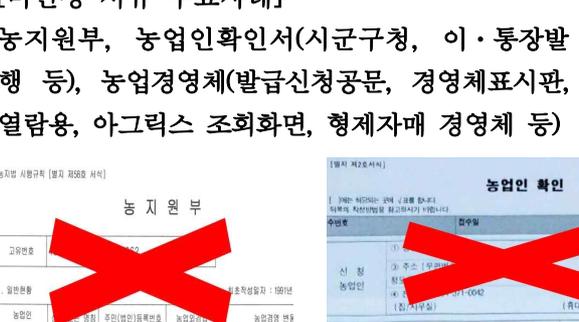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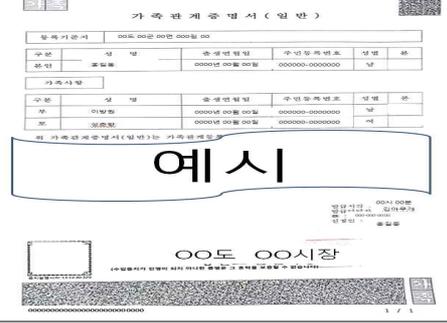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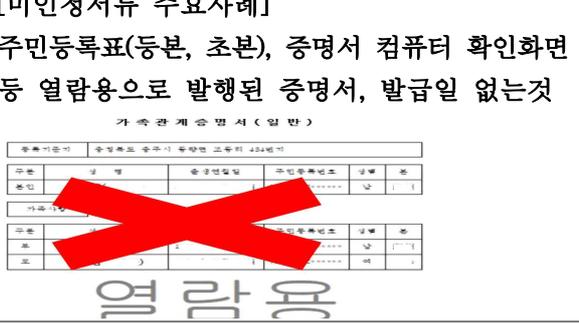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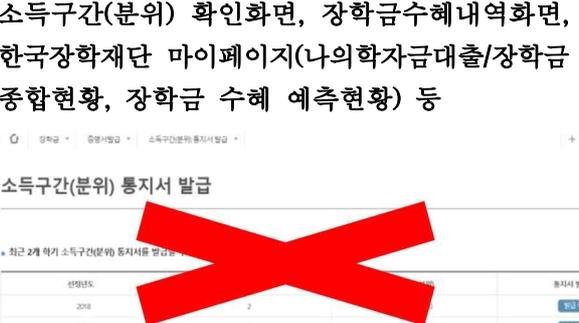
- (구비서류 발급기간) **'19.11.19(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 구비서류 심사 인정가능 여부 : 별첨 사진 O,X 안내 반드시 참조

<별첨> 제출 증빙서류 O.X 인정여부 안내 (예시)

* 모든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 생년월일만 확인 하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처리

서류명	인정 (o)	미인정 (x)
부모 농업인증명서		<p>[미인정 서류 주요사례]</p> <p>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시군구청, 이·통장발행 등), 농업경영체(발급신청공문, 경영체표시판, 열람용, 아그릭스 조회화면, 형제자매 경영체 등)</p> 
가족관계 증명서		<p>[미인정서류 주요사례]</p> <p>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증명서 컴퓨터 확인화면 등 열람용으로 발행된 증명서, 발급일 없는것</p> 
'19.2학기 소득구간 (분위)통지서		<p>[미인정서류 주요사례]</p> <p>소득구간(분위) 확인화면, 장학금수혜내역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등</p> 

심사불가능한 서류(x)	
<p>[심사 불가능 서류]</p> <p>- 크기가 작은 파일(저화질, 저용량 등)</p> 	<p>[심사 불가능 서류]</p> <p>-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p> 

【붙임3】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KRA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케이알에이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귀중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장학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정보, 가족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 관계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단체) 		
제공·조회의 목적	장학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장학생 홍보를 위한 업무공유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중복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중복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등의 신청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확인	위 제1, 2항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부/모			